

<별첨>

총학생회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총학생회장(이하"회장" 이라한다) 선거의절차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동선거의공정한실시를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

1. 선거의 관리 및 절차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4인 이상의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중 호선을 통하여 선임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성균관대학교경영(전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자에게 있다.

제4조(피선거권의 자격) 회장직에 입후보 할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자
2. 입후보 시점기준으로, 등록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인자
3. 소정의 추천서에 20명 이상의 대의원 서명에 의한 추천서를 받은자

제5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개시일 1주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후보등록) 회장입후보희망자는 제4조 제2호의 추천서를 첨부한 소정의 입후보원서를 작성하여 선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회장선거는선거권이있는재학생의과반수이상의투표가있어야유효하다.

제8조(단일후보의 선거) 입후보자가1인인 경우 투표인원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복수 후보의 선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다득표자가 같은 경우 다득표자끼리 7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이나 우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1996. 8. 19 제정)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 제정)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1 제정)

제4조(피 선거권의자격) 1항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1 제정)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2007. 5. 7 제정)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2017. 3. 1제정)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